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13조)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15조제5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거래 행태 및 운임 수준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사자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량·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3조의5(통계의 작성·관리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간행물의 발간

제15조제5항 중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3.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량 <u>3년</u>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 ----- ----- <u>5년</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3조의4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거래 행태 및 운임 수준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사자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

<신설>

량·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의5(통계의 작성·관리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

	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간행물의 발간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 ④ (생략)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⑤ ----- ----- 다음 각 호의 업무----- ----- ----- ----- ----- -----. 1.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3.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017